

한비자 법과정치 샘플

(1, 8, 13, 16단원 내용 중 일부 수록)

[함]정을 [비]켜가기 위한 법과정치 심화 [자]습서

by 지눌스님

전형적인 함정부터 치명적인 함정까지

심화 학습이 필요한 개념과 흔들리기 쉬운 개념 정리

2018학년도 연계교재의 모든 활자를 검토하여 지엽적인 부분까지 완벽 대비

법정, 한방에 끝내버리는 자료

목차

CTRL + F 후 '단원 숫자 + >'로 검색하면 필요한 단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제목 뒤에는 검색에 용이하도록 '>'를 붙여뒀습니다.

예) 3단원으로 가고싶다면 CTRL + F 후 검색어에 '3>'

기타 키워드> (뒤에 >를 붙여서 검색,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앞까지만 입력한 뒤 >를 붙이세요)
아테네, 변천, 시민혁명, 기본권, 이원정부제, 정부형태, 비례대표제, 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긴급명령, 예산안, 특수(불법행위), 나이, 간편한(민사분쟁), 법률구조기관,
이혼, 법률혼, 양자, 친권, 상속, 유언, 소년법, 보석, 형사사건, 소년사건, 국민참여재판, 구속
적부, 부당해고, 근로시간, 청약철회, 소비자, 국제사회, 국제기구, 현실주의, UN총회, 조약

- 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 2 법치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3 정부 형태
- 4 선거와 민주 정치
- 5 정당과 정치 참여
- 6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7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 9 민법의 기초
- 10 불법 행위와 권리 구제
- 11 생활 속의 법
- 12 형법 및 범죄와 형벌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14 사회법
- 15 국제 사회와 국제 사회 행위 주체
- 16 국제법과 국제 분쟁

추천 활용법

수능 전날까지 이 자료의 내용이 추가되고 지워지고 추가되고 지워져서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 자료만 들고갈 수 있을 만큼 압축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 말줄임

언출집결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과 : 재적 과반수 or 재적 과반수 출석

출과 : 출석 과반수

예)

-국회의 법률 의결 정족수는 재과-출과 이다.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국회 재과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잡설

-웬만한 낚시 혹은 함정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다 있습니다!

-연계교재에서 문제를 풀고 대충 답만 맞추며 속속 지나갔다면 보지 못했을 중요한 선지들을 추려서 OX퀴즈에 넣었습니다.

-절대 컴팩트한 자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출제범위 밖의 내용을 배제한 자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계교재와 EBS 강의, EBS QNA들을 종합하여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97%는 범위 안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나머지 3%는 다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제가 공부하는(무식한..)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올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는 싸그리 긁어모은 다음 한곳에 몰아넣고 반복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어도 맞춰버리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공부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때는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풀때는 웬만큼 더러운 자료, 보기, 선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속삭이고 풀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문과는 한문제 틀리면 대학을 못가니까 다풀었다고 옹드려 자거나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됩니다.

첫번째 답개수법칙 체크하고(사탐에도 답개수법칙 분명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별표쳤던 것 위주로 검토하고, 세 번째 모든 문제 옳은 것 고르시오 틀린 것 고르시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네 번째 모든 선지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이 방법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검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15분 이상) 첫페이지 첫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를 검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실수도 검토하는 연습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검토도 여러번 해볼수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마킹시간 2분을 제외한 28분으로 전체 시간을 잡아두고 검토하는 연습도 여러번 해보는게 좋습니다.

1. 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홉스	로크	루소 (프)
정치형태	절대군주제	대의제, 제한(입헌)군주제	직접 민주제, 공화제, 민주공화정
자연상태	투쟁, 갈등	-이성으로 평화 유지 but 이성을 따르지 않는 자로 인해 다소 불안 -법 x, 합의된 권력 x -한명한명이 입법권자, 집행자. -평화로우나 권리 보장이 불확실	초기 : 순수하고 선한 본성. 자유롭고 평등 나중 : 사적 소유(사유재산제, 신분제)로 인한 불평등 아무튼 일단은 평화로운 상태
국가상태	질서유지	사법 -> 공권력 입법-집행+사법의 분리(2권분립)	일반의지 실현 공공선 - 자유, 평등
주권	군주 주권	국민 주권 by 선 (일부 위임)	인민주권론 = 국민 주권 의사는 대표될 수 X -> 대표 자체를 인정 X
저항권 여부	X	(신탁에 기초한) 저항권 O	X
민주정치 여부	x	O	O
개별 특징	-성약설 -전부양도설 저항권 (L)	-백지설 -사유재산의 절대권 주장 -군주 : 집행권, 사법권 -의회 : 입법권	-성선설 -주권 양도나 분할 불가능 -정치 참여 강조 -직접 민주제이기 때문에 법도 직접 만들어 씬.
공통점	<p>-국가는 자유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 인위적 결합체. -국가는 인위적 질서. (자연적 질서 X) -계약할 때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서 재산권, 계약자유,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고있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사회계약의 목적은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인 것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인민의 동의에 있음 <<합정 조심!>> 계약은 개인단위(O) 집단단위(X) <- 루소 뿐만 아니라 홉스, 로크도 계약은 개인단위로 맺는다!</p>		
지문, 선지	<p>-늑대로 우글거리는... 군주 = 사자</p> <p>-사회 계약의 목적은 자기 보존과 질서 유지이다. 자기보존과 질서유지를 강조한 것은 홉스라고 생각하면 됨</p>	<p>-..하지만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생기면서..계약에 의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국민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p> <p>-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O) -자연 상태는 잠재적 투쟁 상태이다. <<합정주의!>> 홉스 선지로 혼동하면 안됩니다 절대절대! 홉스는 자연 상태를 잠재적 투쟁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봄!</p>	<p>-자유와 평등을 보다 확실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건설했다.. 국가의 목적은 당연히 국민의 자연권 보장이다.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것이므로... -루소가 본 영국의 모습 선거날에만 왕이 되고 다음날부터 노예로 되돌아간다..</p>

시대별 민주정치

고대 아테네> 민주정	근대 시민 사회	현대
-민회 입법, 주요 정책 심의, 공직 담당자 선출 , 도편 추방제. 모든 시민 이 민회에 참여 (O) <<함정 주의>> 노예,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여성도 시민 자격 (X) -평의회 민회를 주관하여 운영함. 일상적 행정 업무 처리. 구성원은 민회에서 추천과 운번제로 선출. -재판소 각 부족에서 선출된 재판관들이 재판 담당	/시민혁명 이후로 근대 시민 사회 -신분 차별은 철폐. -재산에 따른 차별	/보통선거의 실시 이후로 현대
-제한적 민주주의 -성차별		
-보통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신분에 따른 차별	-대의제(간접 민주주의)	
-국민 자치 원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

	적용 여부	내용
국민투표	O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 투표가 있다.
국민발안	X	-우리나라는 도입 X -국민이 직접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법청원	O	-국민 발안과 입법 청원은 명백히 다르다! -국회에게 어떤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국회가 그 청원에 따라 법률안을 반드시 의회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발안은 법률의 의결까지 가능하지만, 입법청원은 말그대로 '청원'할 뿐임.
국민소환	X	[참고 :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 박주민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민소환제의 골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참고사항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국민 소환제는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 끝.
주민소환	O	-대상 : 지자체 장, 지역구 지방 의원 [참고 : 무상급식 이슈로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었다가 무산된 적이 있음.] <<함정 주의!>>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됨

가.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일부 - 수완 9쪽

제 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제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 저항권 명문화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국민 주권주의 명문화

...

제 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권력 분립, 입헌주의 명문화

나. 정치의 기능

- 1) 사회 질서 유지 : 통제 / 이해갈등 조정
- 2) 사회 발전 도모 : 사회적 조건 개선 / 공동체 장기 목표

다. 대의제의 장점 : 효율성, 전문성

직접민주정치의 장점 : 의사의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

라. O.X 퀴즈

- 1)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국민 주권론에 바탕을 둔 정치 체제였다. (O/X)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천부 인권에 바탕을 둔 정치 체제였다 (O/X)
- 2)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제보다 대의 민주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였다 (O/X)
- 3) 시민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었다 (O/X)
- 4)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입헌주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O/X)
- 5) 명예 혁명으로 인해 신분제가 타파되었다 (O/X)

마. O.X퀴즈 정답, 해설, 출처

- 1) (X), (X)
국민 주권론과 천부 인권론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사상이다. (수특 15쪽 5번-ㄷ, ㄹ)
- 2) (X)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영토와 인구 때문에 대의민주제를 선택하였다. (수특 15쪽 6번-ㄷ)
- 3) (X) 시민혁명 이후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것은 영국이다. (수특 15쪽 6번 ㄴ) 참고 :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 공화정이 설립되었다.
- 4) (X) 입헌주의 원리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사상이다. (수특 17쪽 4번-ㄱ)
- 5) (X) 신분제의 타파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시민 혁명의 성과였다. 그리고 입헌군주제의 구성요소에는 왕이 포함된다. (수완 6쪽 4번)

2. 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국회>	대통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장 1인 부의장 2인 -위원회 : 본회의 심의 전에 안건을 미리 조사, 심의 -교섭단체 1 단점 : 소수당의 의사 개진을 막음 2 <u>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는</u>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p>만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각각의 권한 행사에 따르는 <u>통제의 주체와 내용</u>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u>국법상 행위는 모두 문서로써</u> 행한다. -국무위원은 행정 각 부 및 국민 안전처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어 두 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두 지위는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 	
회의	<p>회의 원칙 3가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사부재의 원칙 2. 회의 공개 원칙 3. 회기계속의 원칙 	<p>국무회의</p> <p>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출제될 때에는 정 말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므로 "위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선지가 있다면 (O)라고 봐도 무방하다.</p> <p><u>국무총리와</u>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2명)</p> <p>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u>의결</u>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u>구속되지 않는다</u>.</p>	
기능과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구성기능 현재 3인, 선관위 3인 <u>선출권</u> 2. 국정 감시 통제기능 2-1. 국정조사권 2-1-1. 특위 또는 <u>상임위로</u> 하여 금 특정사안에관해 조사하게 함 2-1-2. <u>재적 ¼</u> 이상의 요구 → 본회의 거쳐서 국정조사권 3. 재정에 관한 사항 국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 결산 <u>심사권</u> 	<p>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군통수권</p>	<p>동의인지 승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한다.</p>
		<p>국가원수로서의 권한</p>	<p>권한에 대응하는 국회의 통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적 국가대표권 : 조약 체결-비준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약 체결 비준권 -> 국회의 동의 필요 (사전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헌법수호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계엄선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가긴급권 -> 국회의 승인, 계엄해제요구권 (둘 다 사후적) 재과 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헌법기관구성권 : 국감대대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헌법기관구성권 : 국회의 동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국정조정권</u> : <u>사면권</u>, 국민투표부의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일반사면 : 국회 동의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권이 없다. 팝콘이나 먹어라 로빈 -국민투표부의권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원>
독립성	<p>-법원의 독립 : 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 기관의 관섭 배제.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 법관 임명 X)</p> <p>-법관의 독립 법관의 자유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p> <p>-법관의 신분 보장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탄핵, 금고 이상이면 망한거임)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징계 이상이면 망한거임)</p>
대법원>	<p>-선거 소송 재판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p> <p><<함정 조심!>>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다 가진다.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질 뿐이다.</p> <p>-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조 :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p>
지방 법원 및 지원	<p>지방 법원은 [1. 지방 법원 또는 2. 지원 단독 판사]로부터의 항소 항고심 관할권이다. 지방 법원이 2번 지원 단독 판사에 대한 항소 항고심 관할권이라는 말은 당연하다. 하지만 1번 지방 법원이 지방 법원에 대한 항소 항고심 관할권이 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인데, 영동지방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수특 88쪽 날개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숙 읽고 알아두면 좋다.</p>
특허 법원	고등 법원과 동급. 1심 특허법원 -> 2심 대법원 <<특이하게 2심제! '특허'에 눈도장 찍어두기.>>
행정 법원	지방 법원과 동급. 1심 행정 법원 -> 2심 고등 법원 -> 3심 대법원 행정 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 법원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수특 160쪽 날개)
가정 법원	지방 법원과 동급. 1심 가정 법원 -> 2심 고등 법원 -> 3심 대법원
선거 재판	<p>선거의 효력(선거 자체의 유 무효)이나 당선 유 무효에 관한 재판. 1심 고등 법원 -> 2심 대법원 (비교적 작은 스케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소송 등(사례를 외울 필요는 없다) 스케일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단심제로 끝내버린다. 즉, 1심 대법원 끝! <<심급제도가 특이하다. '선거 재판' 눈도장 찍어두기>></p> <p><<함정 조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 등의 문제는 선거재판과는 구분되어 선거범죄로서 형사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즉 선거범죄로 인한 재판 ≠ 선거재판 <<엄격하게 구분하기>></p> <p>함정 예시 고등법원은 강원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 (O)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피고인이 되지만 단심제가 아니라 3심제이다. 따라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것.</p>
군사 재판	3심제이지만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 에서 실시하고 있다. (cf : 형사사건만 을 다룬다.) 1심 보통군사법원 -> 2심 고등군사법원 -> 3심 대법원

예산안> 심의 의결 절차 심화

번호순으로 진행	구체적인 내용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주의!! 올해의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회계연도(1월 1일)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국회의 심의와 확정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소괄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 결산 특위에게 종합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종합 심사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의 재과-출과를 거쳐 의결된다.
3. 행정부의 집행	-의결되어 확정된 예산안은 1월 1일부터 행정부가 집행한다.
4. 결산	-집행이 끝나면 정부는 감사원 에게 예산안의 결산 검사 를 맡긴다. 결산 검사는 단순히 +- 계산기 두드리는 장부 계산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끝나면 다음은 국회 가 결산 심사 를 맡게 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예산의 쓰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함정 조심>>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결산 심사는 국회가 한다. 매의 눈으로 '검'사인지 '심'사인지 잡아내자.

가. 법률 제 개정 절차

- 1) 국회의장 -> 상임위(수정,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 -> 본회의(재과 출과) -> 대통령
- 2)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 3) 대통령의 환부거부 시 순서는 다시 국회의장에게 돌아간다. 단!
 - 가) 이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 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며
 - 다) 법률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환부거부할 수는 없다.
 - 라) 즉 법률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된 법률안 의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마) 재의결 정족수 : 재과 출2/3 -> 확정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 4) 확정된 법안은 20일 경과 후에 효력 발생.

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을 반드시 명확히 정리하기>>

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그리고 각 권한에 대한 의회와 사법부의 통제수단을 연결지어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라. 참고로 국감대대헌은 [국정원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머릿글자만 따온 것이다.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익혀두면 쓸쓸하다.

마. 헌법 개정 절차

- 1) 국회 재과or대통령 -> 대통령 공고 20일 이상 -> 60일 이내 국회 의결 (재2/3) -> 30일 이내 국민투표 부의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찬성 과반 -> 확정! 대통령이 즉시 공포.
(2 X 3 = 6 이라고 외워두면 편하다. 공고 20 국민투표 30 = 국회 의결 60)

<<함정 조심!!>>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X)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대통령은 공포할 뿐 개정안 자체는 이미 확정된 것!

바. O.X 퀴즈 (이하의 문제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형태를 바탕으로 함)

- 1)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및 견제 방안에는 국민이 국민투표나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O/X)
- 2)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O/X)
- 3)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류한다. (O/X)
- 4) 법률안 환부 거부의 과정에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X)
- 5) 국회 위원회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O/X)
- 6)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O/X)
- 7)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그 행사의 한계를 보여 준다. (O/X)
- 8)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하는 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 (O/X)
- 9)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청구하는 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O/X)
- 10)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제기하는 심판은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O/X)
- 11)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였을 때 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X)
- 12)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 13)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에 해당한다 (O/X)
- 14)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은 발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O/X)
- 15)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O/X)
- 16)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O/X)
- 17)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행해질 가능성이 낮다. (O/X)
- 18) 감사원은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O/X)
- 19) 감사원은 법원에 대한 감찰을 통해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O/X)
- 20) 헌법 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O/X)
- 21)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O/X)

사. O.X퀴즈 정답과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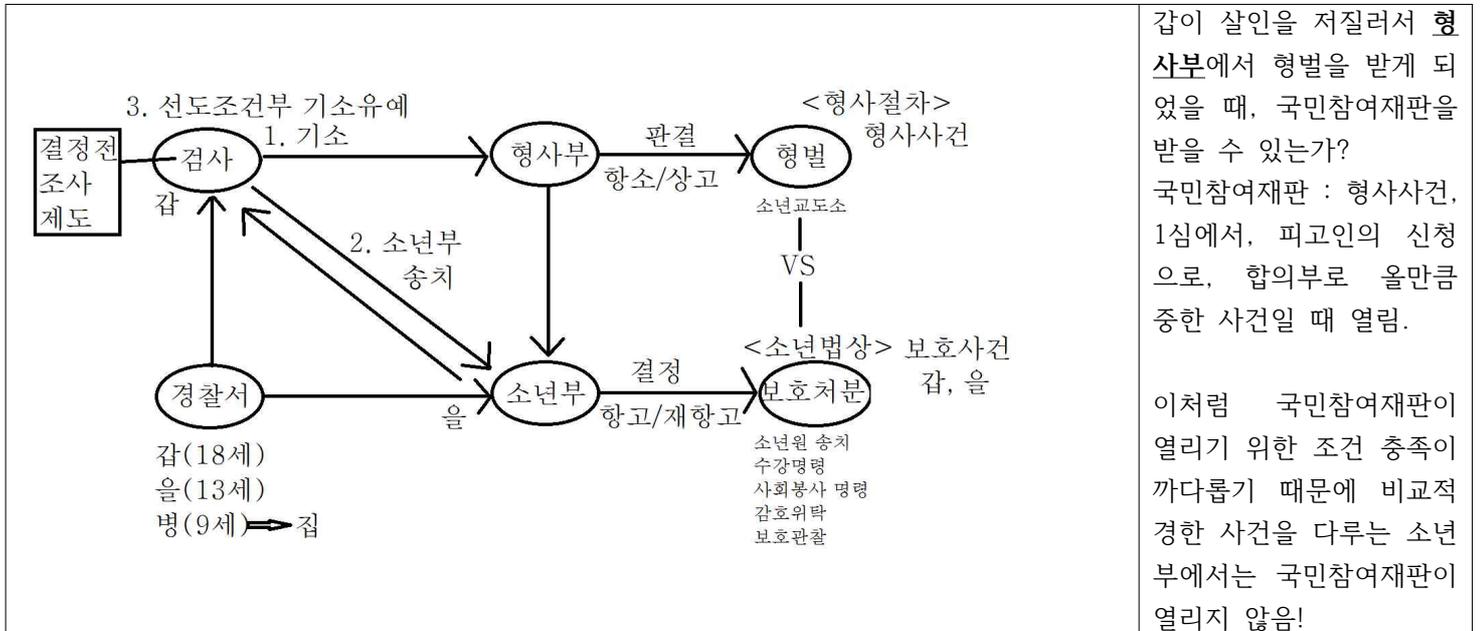
- 1) (O) (수특 89쪽 맨 아래)
- 2) (O) (수특 89쪽 상단)
- 3) (X)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보통 다음 회기가 오기까지 계류하지만,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수특 89쪽 상단)
- 4) (X) 우리나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한 환부 거부의 형태를 띤다. (수특 91쪽 1번-5)
- 5) (O)(수특 91쪽 1번-1)
- 6) (X)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수특 91쪽 3번-5)
- 7) (X)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수특 92쪽 5번-4)
- 8) (O) 해당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한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 (수특 92쪽 8번-1)
- 9) (X) 심급제도가 있는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그 심판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없다. (수특 92쪽 8번-3)
- 10) (X) 해당 심판은 정당해산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수특92쪽 8번-5)

- 11) (O) 탄핵 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특 93쪽 2번-4)
- 12) (X)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게는 동의를 받아야 비준할 수 있다. (수특 94쪽 4번-4)
- 13) (O) (수특 94쪽 3번-5)
- 14) (O) 단 처분 또는 명령을 내린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그 즉시 처분 또는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수특 95쪽 6번 보기)
- 15) (O) 법관에 관해 교재에 실려있는 개념은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법관의 자격이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관을 자격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 헌법 101조에 있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법관의 자격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만약 선지로 나온다면 평가원은 아주 명확한 근거를 들어 법관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 할테니 자격은 법률이니 헌법이니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법관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은 임기, 신분의 보장, 법관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두 명문화된 헌법을 통해 정해져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법관의 독립은 헌법이, 법관의 자격은 법률이 보장한다고 알아두면 된다. (수특 97쪽 9번)
- 16) (O) 헌법 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행정부를 통할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헌법 86조를 다시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라는 구절이 있다. 즉 행정각부의 통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대통령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주장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행정각부 통할 여부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즉 행정각부의 통할 여부를 물어보는 보기나 선지가 있다면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확실한 것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사실이 헌법에 명시된 리얼팩트라는 것이다.
- 17) (O)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제출안과 달리 국무회의를 거쳐 이미 조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완 49쪽 3번)
- 18) (X)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예산안이 아니라 결산을 검사하며 그 결과는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완 51쪽 7번)
- 19) (X) 감사원은 국회나 법원에 대한 감찰은 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나 법원에 대한 감찰은 하지 않는다. (수완 51쪽 7번)
- 20) (X) 최고 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법원이다. (사법부의) 최고 법원 = 대법원. 헌법 재판소는 3권 분립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를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수완 51쪽 8번)
- 21) (X)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수완 52쪽 9번)

3.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우리나라 법의분류>					
실정법					
국내법					국제법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이면서 실체법		공법이면서 절차법	실체법	실체법	
형법		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 행정형법 + 형사특별법(=특별형법)을 말한다. -특별형법에는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다 -도로 교통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형사 사건 vs 소년사건>	
형사 사건	소년 사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다 형사사건임. -기소는 무조건 검사가 함.	-범죄소년이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사건을 처리한다.
국민참여재판> -재판 절차 :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 및 평결 -> 판결 선고 -개최 : 지방 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1심) 관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 으로 개최된다. <주의!> 고등 법원 이상의 재판과 민사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지방 법원 지원 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회부결정 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한다.) -배심원 자격 :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결격사유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일정 전과자, 변호사, 경찰관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평의 :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 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유죄의 경우 배심원들은 양형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만 한다.	나이는 모두 만 연령임 19세 미만을 소년법상으로 '소년'이라고 부름. 19세 미만 14세 이상 : 범죄소년 - 14세 미만 : 형사 미성년자 -주의! 만 14세 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님 .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조각 14세 미만 ~ 10세 이상 : 촉법소년 10세 미만 :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 (집으로!) - 경찰서장 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 에 송치할 수 있다. - 경찰서장 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등에 대해서 직접 관할 소년부 에 송치할 수 있다. <<10세 이상이므로 범죄소년을 포함한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함정 조심>>평결은 배심원이 내리지만 판결 은 판사가 내린다! <<함정 조심>>양형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 의 권한이다!	<<함정 조심!>> 각 구간의 경계 에 있는 19세, 14세, 10세는 특히 주의하기



갑이 살인을 저질러서 형사부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국민참여재판 : 형사사건, 1심에서, 피고인의 신청으로, 합의부로 올만큼 중한 사건일 때 열림.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위한 조건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사건을 다루는 소년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음!

보호처분 심화
-<형사절차>에서도 형벌을 부과하면서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동시에 내려지지 않는다. 어째서 그럴까?
형벌 혹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검사로부터 분기가 나뉘었으며,
형벌은 <형사부>에서 내리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부>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검사는 을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다 (X)
-> 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검사에게 가지 않는다.

(위의 그림 완전히 이해하기)	보호처분	형벌
범죄소년 (만19세 미만 14세 이상)	O	O
촉법소년 (만14세 미만 10세 이상)	O	X
보호처분을 내릴수 없는 형사미성년자(10세 미만)	X	X

-L

형사 보상 제도 VS 배상 명령 제도 VS 강제 집행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배상 명령 제도	강제 집행 제도
형사	형사	민사
<p>-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p> <p>-물질적 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p>	<p>-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해당 죄들이 정해져 있다)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상속인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가능.</p> <p>-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p> <p>-배상 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p>	<p>-민사 소송 이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p> <p>-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p> <p>(사실 그냥 공증이 아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공증이 있고, 집행력 있는 공증이 따로 있다. 그런데 몰라도 문제를 풀 때 지장은 없다. 알게된 김에 머리 한쪽 구석에 대충 알아두자(?))</p>

-

가.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심화

- 1)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다.
- 2)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고용인 등이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 3) 법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체포 영장에 의하여 체포, 현행범으로 체포,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5) <<참고 :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은 별개이다. 명확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둘을 절대 혼동하지 말자.>>

가) 체포영장

- (1)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판사가 발부.
- (2)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사안이 급박할 때에는 판사의 발부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3) <<함정 조심!!>> 체포영장, 경찰이 청구하고 검사가 발부? (X)
- (4) 경찰이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X)

나) 구속영장 :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판사가 발부.

- 6)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면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7)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꼭사리로 반드시 알아두기!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만** 유효하다. 민사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8)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나. 소년 사건 <<주의!>>

- 1) 14세 이상~19세 미만인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로 송치했다고 하자.
이렇게 형사부로 넘어간 경우에서도 처벌보다는 '보호 목적'이다. 형사 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거나 하기 때문..

다. 공판

- 1) 절차
인정 신문 -> 검사의 모두 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 증거 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의견 진술 ->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 판결
- 2)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3)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 4) 심리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법정 질서를 해하는 자에게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5) 법정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수사

- 1)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
- 2) **수사를 주재**하는 것은 검사이다.

마.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1)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어야 함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님!>
- 2)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해 줌.

바. 명예 회복 제도

- 1) 무죄 판결 등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무죄 재판 사건 등에 대한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해 줄 것을 무죄 재판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사. [책임 마스터!]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 조각? 미취학 아동의 책임 조각? 가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데 이 자료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때그때 판단한다며! 그런데 14세 미만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네? 하.. 작성자님. 멧돌 손잡이 알아요? 멧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멧돌에 개념을 갈려고 집어넣고 멧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하고 화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두 개념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다.

1) 먼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대한 차이를 알아두자.

'민사상 책임'이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란 형사상 제재를 받을 책임을 의미한다.

즉 같은 '책임능력'이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위의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 조각'의 책임은 '형사상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풀어서 말하면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상 제재를 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고 본다'가 된다.

2)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형사적 책임은 조각되는데 민사적 책임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렇다. 아주 자명타.

아하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가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남아있는 민사적 책임 때문인거죠? 뭐, 뭐라고? 다시 개념을 명확히 하자. 민사상 책임이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보호처분이란 범죄성 개선을 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한 형태이지, '손해배상'의 일환으로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3)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각 책임이 적용되는 상황을 볼 차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가지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6가지가 있다.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 이렇게 6가지이다.

앞에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확실히 나누어 뒀으니 이미 감이 잡혔을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책임**이란 '형사상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적 제재를 받을 책임**을 말한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에서 **책임능력**이란 '민사상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말한다.

자! 이제 분류가 모호했던 두 개념의 분류와, 개념을 적용할 틀도 깔끔하게 분류함으로써 정말로 적용할 준비가 끝났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정말 준비 되셨나요?????!! 게~~살~~버거의 비~밀은~~~ 바로~~!!!!

지금 수능보는 현역들은 스폰지밥을 TV에서 본적이 있을까요? 다시봐도 꿀잼 올해 수능치고 불거임

4) 중학교에 다니는 만 13세 전교1등인 촉법소년 갑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부렀다. 경찰청장은 직접 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갑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중학교에 다니고 전교1등이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은? 슈얼 와이냐? 당연히 존재한다. 즉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은 만 13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다시말해 갑에게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 즉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적 제재는 받지 않아도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갑은 촉법소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선지가 나오면 바로 '출제자님. 낚시라고 알아요? 이런 낚시를 뺀 함정이라그래요 함정. 어이가 없네..' 하고 스샤샤 말도안되는 선지라고 판단해버리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갑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형사상 책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다.

5)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있다.

'자신이 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민사상 책임능력'이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다' ->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가 된다.

10세 미만의 소년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결국 소년과 그 보호자를 혼계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망할 법이 있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렇다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 10세같은 영악한 10세 미만 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아예 없는 것인가? 그렇다. 아예 없다! 하지만 주변사람까지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특수불법행위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아. O.X 퀴즈

- 1)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법관이 할수 있으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O/X)
- 2) 가정법원 소년부는 범죄소년에게 과료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O/X)
- 3) 과거에 갑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 행위가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당시 갑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거나, 피해자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었다.(O/X)
- 4)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때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한정된다. (O/X)
- 5) 만취한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된다. (O/X)
- 6) 대안적 제재수단인 보안 처분은 자유형과 달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O/X)

자. O.X퀴즈 정답과 출처

- 1) (X)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수특 153쪽 5번)
- 2) (X) 과료와 벌금 모두 형벌의 일종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내릴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료와 벌금 모두 X. (참고 : 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형법에 따른 벌이 아니라 행정법에 따른 법으로서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건 시험에는 안나올 듯.. 그런데 왜 적었냐구요? 재밌잖아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었다니)
- 3) (X)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별도의 절차로 해결한다. 범죄는 형사 사건이지만 피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는 식이다. 갑의 경우 과거 행위에 대해 당시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성립과 불법행위의 성립은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수완 75쪽 2번 변형)
- 4) (X)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도 포함된다. (수완 75쪽 2번)
- 5) (X) **'술' 이야기가 나오면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라고 해도 행위 시의 상황에 따라 법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심신 상실 상태라는 표현은 완벽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심신 상실 상태라는 표현에 빨려들어가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고의로 만취상태가 된 뒤 불법행위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은 조각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조건 만으로는 **심신 상실의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더구나 고의로 마셨는지 혹은 심신 상실 상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마셨는지도 알 수가 없다.(첫 번째 이유로 간다) 따라서 책임 조각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수완 77쪽 5번)
- 6) (X) 치료 감호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며,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명령 등도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수완 79쪽 9번)

4. 16>국제법과 국제 분쟁

조약>VS국제 관습법 VS 법의 일반원칙

(기타 : 보조수단으로서 판례와 학설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음)

조약 (성문)	국제 관습법 (불문)	법의 일반원칙(불문)
체결 절차 (O) 체결 당사국만 구속	국제관행 + 법적 확신	
	체결 절차 (X) 포괄적 구속력 (O) : 국제사회 모든 국가를 규율할 수 있음.	
-양자 조약 -다자 조약 아래 조약의 예시들 알아두기! <<주의!>> UN 헌장 도 조약의 하나임. 한비 상호 방위 조약 한중 어업 협정 교토의정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 즉 별도의 체결 공포 절차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지님. -국제관습법 중 조약으로서 명시적으로 국가 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음(안중요) -단순히 사실적인 관습적 행위가 아니고, 법에 준거하는 의무로서의 행위 라는 법적 확신 을 각 국가가 가져야 한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내정불간섭의 원칙 -포로의 인도적 처우 -전쟁법의 일반원칙 <-- <<함정 주의!!>> 이름에 일반원칙이 들어가지만 일반원칙이 아니라 국제 관습법이다! -강제송환 금지원칙 (<-수완 100쪽 1번 보기에서 언급됨) 외내포전 (시험치기 직전에 이렇게 머릿글자만 따서 외워두면 문제풀 때 착착 떠올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편함)	3개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신의선실의 원칙 -손해배상 -권리남용금지 신손권으로 외우면 편함 (삼국지의 손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신, 손권이라 하오!" 라고 하는 모습을 이용한 하이 켈리리 연상법... 흠흠..)

우리나라 헌법상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을 말함)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 조약 체결 흐름 + 심화

1. 전권대사의 조약 체결(서명)으로 조약 내용 확정) ->
2. 국회의 비준 동의 ->
3. 대통령의 비준
4. 대통령의 **공포**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

-비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함

-비준만으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X) 비준서의 교환, 기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수정 비준, 조건 비준은 불가. 내용 전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함.

-대통령이 체결해도 되지만 바빠서 보통 체결권자로 전권대사를 보내고, 최종 확인인 비준만 직접 함.

-동의를 사전적, 승인은 사후적이라는 점에 주목! 비준 '동의' **이후에** 비준이 이루어진다.

-모든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부 조약은 [1. 체결 ->(동의 생략)-> 2. 비준] 끝!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의 국내법적 적용 여부는 고교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출처 : EBS QNA)

가. 대안적 해결 방식

- 1) 국제 조정 :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국제 조정 위원회가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 2) 국제 중재
- 3) 의의 : 기존의 해결 방식에 비해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나. 국제 조정 위원회

- 1) 상설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설치된다.
- 2) 국제 심사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분쟁 당사국의 국적 위원 각 1명을 포함한 5명 또는 3명의 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 3) 심리 절차는 대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조정 작업 결과로서 보고서(조서)에 제시된 조정 조건은 국제 재판의 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 신사협정

<<함정 주의!!>>

신사협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법 자체가 아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조약도, 국제 관습법도, 법의 일반원칙도 아니다. 그냥 나똥 나똥이다.

라. O.X퀴즈

- 1)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O/X)
- 2) 조약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다 (O/X)
- 3)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O/X)
- 4)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은 정부에만 적용될 뿐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O/X)
- 5)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있어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나 집행 수단이 없다 (O/X)

마. O.X퀴즈 정답, 해설, 출처

- 1) (X)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인 경우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수특 187쪽 1번 ㄱ)
- 2) (X)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다. 이론적으로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약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특 187쪽 4번-1, EBS QNA로 보충)
- 3) (X)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뿐이다. (수특 187쪽 4번-2 국회의 동의를 조약의 효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으로 이해. EBS QNA 보충)
- 4) (X)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법도 국내법처럼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 (수특 188쪽 6번 보기)
- 5) (O)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나 집행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수특 190쪽 4번-선지5)